

“

타사 항공권 사용 등 오 탑승 사건사례분석 및 재발방지책

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

손지훈 김창기 이나은

1 사례를 통한 사건 개요 및 내용

“



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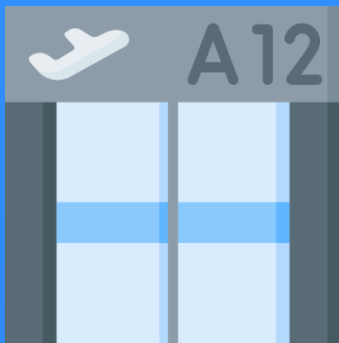
U 항공 오탑승 사건

2017년 4월 24일, Lucie Bahetoukilae라는 프랑스 국적의 여성은 뉴어크(Newark)에서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생각했으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함.



J 항공 오탑승 사건

2019년 5월 13일, 제주에서 출발해 청주로 가려던 J 항공 여객기내 승객 한명이 잘못 탑승한 사실을 항공사 측에서 늦게 인지하여 램프리턴함.



갑작스러운 게이트 변경

갑작스러운 **게이트 변경**으로 인해 변경된 탑승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탑승구의 위치와 혼동하여 오탑승하는 경우.



항공사의 실수

항공사 측의 **오발권**이나 **탑승권 정보 확인 실수** 등 항공사의 실수로 인한 오탑승 사례도 생겨나고 있음.



승객의 착오

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승객이 탑승구 및 목적지를 착오하여 항공기를 오탑승 하는 경우.

탑승권 인식 기기 개발 및 적용

탑승권 및 신분 확인 진행 과정

에어사이드 들어오기 전 신분 및 탑승권 확인
(기존과 동일)



탑승교 입장 전 신분 및 탑승권 확인
(기존과 동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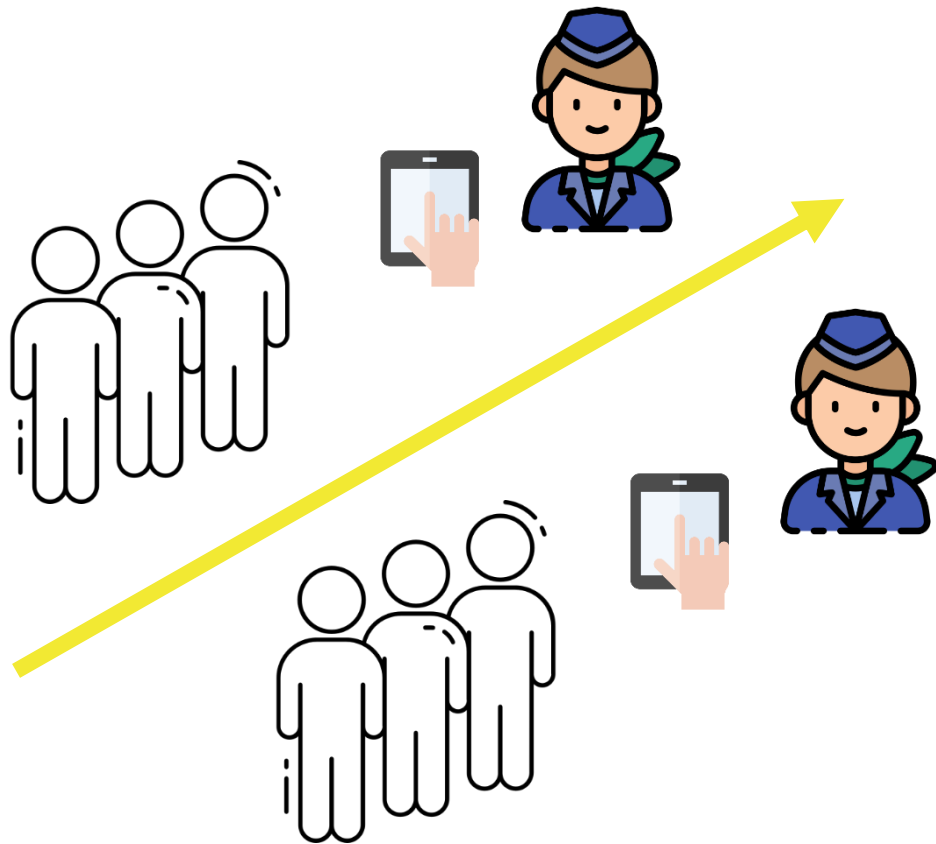
항공기 탑승 전 기기를 통한 확인 및 인식
(새로 추가한 사항)

전자
탑승권

-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**스마트 패스** 방식
- 편명, 탑승구, 시간, 탑승권 및 여권 정보 포함
- **게이트 긴급 변경을 대비한** 알림 서비스 제공



탑승권 인식 기기의 활용



올바른 탑승권 인식시



올바르지 못한 탑승권 인식시

- 확인 절차를 위한 탑승 시작 시간 변경 (30분 전 → 40분 전)
- 탑승권 확인 기기를 **양쪽에 배치**하여 대기 줄 최소화
- 전자 탑승권 및 지류 탑승권 **QR코드**를 통한 개인 정보 표출
- 잘못된 탑승권 인식 시 화면에 표출 및 경보음 발생

국토교통부

- **탑승권 인식 기기** 도입 절차를 수립
- 항공사 및 공항은 절차에 맞게 수행

사법부

- 오탑승 관련 **항공보안법** 재정

항공사 (안전·보안 및 서비스 관련 부서)

- 탑승권에 **QR코드 및 여권 정보** 첨부
- 탑승권에 여권 사진 및 생체인식, 항공편 정보를 포함
- 탑승권 인식 기기 도입 및 운영



▲ 2023년, A 항공 조직도 (예시)

제19조(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) ① 공항운영자,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>

1.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
2.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
3.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**국토교통부령**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. <개정 2013. 4. 5.>

1.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보고를 받은 경우: 해당 항공기에 대한 보안검색 등의 보안조치
2. 항공기가 출발한 후 보고를 받은 경우: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국가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 리계류장으로 유도하여 보안검색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>

[전문개정 2010. 3. 22.]

▲ 부족한 오탑승 관련 법률

4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

항공보안법

- 제15조 5항

·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,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송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5조의2 2항

·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.

- 제15조의3 1항

·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1. 공항운영자: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

2. 항공운송사업자: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

가.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: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

나.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: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

4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

항공보안법

- 제15조의3 2항

·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**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**

- 제 15조의3 3항

·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**14세 미만**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**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**

- 제 15조의3 4항

·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“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
2.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



활동을 통한 교훈/ 기대효과

1

이중 확인이 아닌 **삼중 확인**으로 인해 항공기 오탑승을 줄일 수 있을 것임.

2

보딩 브릿지에서 운항 승무원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**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피로도 감소** 효과가 있음.

3

사람이 아닌 기계로 인한 탑승권 확인으로 **정확성이 향상**됨.

4

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패스나 전자 항공권을 활용하여 추후 UAM 등이 활성화 되었을 때도 **간편한 사용**이 가능함.

★ 공통된 주 목적 → 불법방해행위 방지

참고 자료 및 출처

- “”저 비행기 잘못 탔어요“ 제주항공 여객기 이륙 직전 회항”, 세계일보, 김용준 기자, 2019.05.13
- “How one United passenger’s 7-hour flight turned into a 28-hour nightmare”, EYEWITNESS NEWS, Nina Pineda, 2017. 05. 04
- 국가법령정보센터, <https://www.law.go.kr/>
-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, <https://kind.krx.co.kr>